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4-14호

우정사업에 대한 깊은 이해, 다년간의 방대한 자료 축적, 전문적 편집 능력 등이 필요한 '우정사업 주요 홍보물' 발간업무를 역량있는 전문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수준 높은 홍보물을 안정적으로 발간하기 위해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1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 우정사업 주요 홍보물 발간』 위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14년 3월 14일

우정사업본부장

우정사업본부 주요 홍보물 발간위탁에 관한 사항 제정

우정사업본부 주요 홍보물 발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1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 주요 홍보물 발간』 위탁운영기관 및 위탁업무범위를 고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운영기관) 우정사업본부 주요 홍보물 발간 업무위탁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법인명 : 재단법인 한국우편사업진흥원

나.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중로83

제3조(위탁업무 범위) 우정사업본부 주요 홍보물 발간 위탁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주요 홍보물(사보, 백서, 연차보고서 등)의 기획

나. 외부필자 섭외·청탁

다. 우체국 등 업무현장 취재

라. 관련 자료수집, 원고 작성·편집

마. 홍보물 인쇄, 제작 및 배포

바. 기타 관련 부대업무 등

부칙<제정 2014. 3. 14.>

이 고시는 2014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